

(의안번호 제269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06.

고성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2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0. 18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기결

2. 제한이유

가. 읍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·수탁 운영 협약기간이 2023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 위·수탁 운영 재협약 필요함

나.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의 효율성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위탁근거

가.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제4호(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)

나. 고성군 읍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
(관리운영)

다.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
4. 위탁사무

가. 시설현황

- 시설명: 고성군 읍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
- 위치: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3
- 시설용량: 1,000m³/일
- 처리공법: HANT공법+황탈질설비

나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간)

- 위탁방법: 위·수탁 운영 협약 체결
- 위탁범위
 -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오·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운영 및 수질 관리
 -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을 위한 읍대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관리
 - 입주업체 처리비용 부담금 산정
 -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

5. 추진일정

- 2023. 12. : 위·수탁 운영 협약 체결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제출 사유

-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읍대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위탁기간 만료(2023.12.31.)로 인한 위탁 재협정을 위해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○ 주요 내용

- 대상시설 및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[참고 1] 대상시설 현황

- 시설 명: 고성군 읍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
- 위치: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3
- 시설용량: 1,000㎥/일
- 처리공법: HANT 공법 + 황탈질 설비

[참고 2] 위탁사무 개요

- 위탁근거: 물환경보전법 제48조
- 위탁사무: 읍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
 -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오·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운영 및 수질 관리
 -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을 위한 읍대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관리
 - 입주업체 처리비용 부담금 산정
 -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
- 위탁기간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간)
- 위 탁 비: 원인자 전액 부담
- 위탁방법: 위·수탁 운영 협약 체결(읍대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)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,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, 위탁사무 수행의 효율성 및 원활한 수질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고 사료 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10. 18. 원안가결 함.